

#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752호

2019년 6월 21일 금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6195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인천광역시조례 제6196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조 례

인천광역시 조례 (공 포)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시민건강 증진 및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을 신설하는 등 민선7기 주요정책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행정관리국과 해양항공국 직제순서 조정(제9조 및 제14조)
- 복지국과 여성가족국 업무 재편(제10조 및 제10조의2)
  - 보건복지국을 복지국으로 변경하고, 노인 업무를 여성가족국에서 이관
  - 외국인다문화 업무를 보건복지국에서 여성가족국으로 이관
- 건강체육국 및 주택녹지국 신설(제10조의3 신설, 제17조)
  - 건강체육국: 보건, 체육, 건강, 위생 업무
  - 주택녹지국: 건축, 주거, 경관, 녹지, 공원 업무
- 문화관광체육국과 환경녹지국을 문화관광국과 환경국으로 변경하여 각각 문화관광 및 환경 업무를 전담하는 국으로 재편 (제11조 및 제12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6월 21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95 호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도시재생건설국 및 도시균형계획국”을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및 주택복지국”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으로, “행정관리국, 보건복지국”을 “해양항공국, 복지국”으로, “문화관광체육국, 환경복지국”을 “건강체육국, 문화관광국, 환경국”으로, “해양항공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도시재생건설국 및 도시균형계획국”을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및 주택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둔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편성·운영 및 국비 등 재원확보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2. 재정리스크, 부채 및 공기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제도의 운영, 세원개발과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4. 시비·국비회계의 총괄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보건복지국)”을 “(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3. 노인복지 및 장묘정책에 관한 사항
4. 보훈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건강체육국) 건강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 건강증진, 의·약 관리, 해외의료사업,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생, 식품안전, 공중위생, 위해식품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2. 도서관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환경녹지국)”을 “(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2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주택녹지국) 주택녹지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 및 주택건설·공급·관리,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4. 녹지조성 및 조경,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7조의2, 제10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의 존속기한은 2021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건강체육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을 “건강체육국장,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건강체육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국장”을 “건강체육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건강체육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건강체육국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건강체육국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문화관광체육국장”을 “시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리국장, 환경녹지국장”을 “복지국장, 주택녹지국장”으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주택녹지국장”으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주택녹지국장”으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제가목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⑳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㉑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주택녹지국장”으로 한다.

㉒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㉓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㉕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㉕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㉖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중 “도시균형계획국”을 “주택녹지국”으로 한다.

## [별표 1]

##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4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인천중부 소방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04(항동)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운북동, 운남동, 중산동, 을왕동, 덕교동, 남북동, 무의동 제외)·동구·옹진군(북도면, 영흥면 제외) 일원
인천부평 소방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24(갈산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원
인천남동 소방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4(구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구월동, 만 수동, 장수동, 서창동, 수산동, 운연동
인천서부 소방서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2(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 일원
인천공단 소방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8(고잔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원(송도동 제외) 남동구 : 남촌동, 도림동, 논현동, 고잔동
인천계양 소방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74(계산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원
인천미추홀 소방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주안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원
인천강화 소방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23번길 11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인천영종 소방서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268 (운서동)	인천광역시 중구 : 운서동, 운북동, 운남동, 중산동, 을왕동, 덕교동, 남북동, 무의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 북도면
인천송도 소방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60번길 15 (송도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 영흥면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시민 건강증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강체육국과 주거, 도시경관 및 공원 등을 연계한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녹지국을 신설하고,
- 시민의 관심과 생활에 직결되는 환경·건강·복지·여성·가족 분야 기능을 강화하고 대규모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정원을 증원·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미세먼지, 쓰레기 저감, 악취, 응급의료 등 시민생활 밀착형 행정수요 및 친수공간 조성, 일자리 등 대규모 현안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원 73명 증원(제2조)
  - 총 정원 : 6,812명 → 6,885명(73명 증)
  - 집행기관 정원 : 3,717명 → 3,790명(73명 증)
- 건강체육국 및 주택녹지국과 노동, 보훈, 자활, 가족 증진, 군부지반환 및 공원 조성사업 전담부서 신설, 지역공동체담당관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 (별표 3)
  - 3급 정원 : 19명 → 21명(2명 증)
  - 4급 정원 : 145명 → 150명(5명 증)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6월 21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96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812명”을 “6,88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717명”을 “3,790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5% 이내	17% 이내	35% 이내	38% 이내	4% 이상	1%이내

##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9% 이내	81% 이상	19% 이내	81% 이상

##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 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8% 이내	11%이내	16% 이내	31% 이내	30%이상

##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 상 당 이 상	5급 상 당	6급 상 당	7급 상 당 이 하
비 율	48% 이내	18% 이내	12% 이내	22% 이상

※ 비 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 [별표 3]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총 계	6,885					
정무직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3,667					
1급	1				1	
2급	1				1	
2급·3급	3	2	1			
3급	21	13		1	4	3
3급·4급	2	2				
4급	150	93	3	4	15	35
5급 이하 소계	3,480					
전문경력관 소계	9					
별정직 계	17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7	2	5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77					
연구관	30			23		7
연구사	147					
지도직 계	28					
지도관	5			5		
지도사	23					
소방직 계	2,995					
소방정	18	8		10		
소방령 이하 소계	2,977					